

	등록금심의위원회운영규정	규정번호	3-8-18
		제정일자	2010.12.13.
		개정일자	2025.09.01.
		개정차수	12차
		소관부서	전략기획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법령 고등교육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1조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에 따라 안산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의 등록금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대학의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
2. 대학의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대학의 설립목적 및 교육목적에 동의하는 학내·외 제 구성원을 대표하는 자로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회의 각 구성원 중 어느 한 그룹의 수가 위원회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, 학생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이상인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위원장은 전략기획처장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 1인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.

⑤ 위원회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4조(자격) ① 교직원위원은 전략기획처장, 학생성공처장, 행정지원처장, 예산업무담당자로 한다.

② 학생위원은 학생협의체에서 추천한 등록금 책정 대상 학년도 재학생으로 한다. 다만, 등록금 책정 대상 학년도 개시 전에 위원을 위촉할 경우 대상 학년도 재학예정자로 위촉할 수 있다.

③ 관련 전문가는 교직원위원과 학생위원이 협의하여 정한다.

④ 제1항,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촉된다.

제5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으며 교직원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② 결원 또는 교직원 보직 임면으로 인한 보궐이 발생하면 새로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회의개최 공지)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, 장소, 안건 및 회의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 해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1. 회의 일시, 장소 및 안건: 회의 개최 7일(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) 전까지 통지 및 대학홈페이지 공개 <신설 2023.09.01.>

2. 회의자료: 회의 개최 5일(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) 전까지 송부 <신설 2023.09.01.>

제7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이상인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교직원, 학

생,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. <신설 2023.09.01.>

④ 회의 개최 방법은 대면 회의와 원격 영상회의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. <신설 2025.09.01.>

제8조(자료요청권) 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.

제9조(회의록) ①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발언 요지,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준하여 회의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③ 회의록은 회의일부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대학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게재일부부터 3년이 상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2. 공개될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

3.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사항

④ 제3항의 단서에 따라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때에는 비공개사유 및 비공개기간을 공시하여야 하며, 비공개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.

⑤ 회의록 서명은 전원 자필 서명을 원칙으로 하나 원격 영상회의를 진행할 경우 출석위원 중 3명을 호선하여 회의록 각 장 사이에 걸쳐서 서명하거나 간인하게 할 수 있다. <신설 2025.09.01.>

부 칙

이 규정은 2010 년 12 월 13 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 년 11 월 1 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 년 9 월 1 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 년 3 월 1 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 년 3 월 1 일 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제3조 내지 제5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 년 6 월 1 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 년 9 월 1 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 년 3 월 1 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 년 3 월 1 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 년 9 월 1 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관한 경과조치) 제9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제9항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24.08.14.이후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.